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3. 10. 서명옥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3. 1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8.1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8.19.)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9.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9.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명옥 의원)

전공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수련생 지위와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전공의는 1주일에 최대 80시간, 연속하여 최대 36시간을 수련을 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등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전공의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있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치료하던 전공의가 피해자 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공동으로 4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있었음. 이처럼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수련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련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러한 열악한 수련환경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는 수련환경평가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전공의의 처우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과 의료사고·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 제공의 의무 및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수련시간 결정 및 휴게시간 등의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의 전공의 대표성 제고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으로부터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 조성과 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을 수련병원장의 의무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지위에 있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의사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서 처방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수련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처방도 내리고 있어, 법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해서도 의사의 주의의무를 파악하는 일반적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공의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제4조제3항의 규정만으로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수련병원장 등의 의무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